

예산총칙

제 1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간주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계	4,441,559,000	4,441,083,949	475,051
일반회계	3,737,941,853	3,737,466,802	475,051
특별회계	703,617,147	703,617,147	0
기타특별회계	373,706,656	373,706,656	0
농어촌주택사업	11,325,667	11,325,667	0
의료급여기금	341,990,989	341,990,989	0
동부권특별회계	20,390,000	20,390,000	0
공기업특별회계	329,910,491	329,910,491	0
지역개발기금	329,910,491	329,910,491	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,086,21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